- 배수지 정밀안전진단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I.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세부지침

Ⅱ.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4. 4.



I.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세부지침

이 지침 및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에서 관리하는 배수지의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지침으로 본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이 지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가. 공통사항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별표4] 제1호를 기준으로 하되 본 건설엔 지니어링의 여건과 실정에 맞추어 일부 보완 적용할 수 있다.
- 2) 각 항목별 점수는 배점범위까지만 인정하며, 기간의 계산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 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3)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4)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 본부 수도시설관리소에서 조사, 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 5)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 6) 증빙서류를 미첨부하여 확인이 불가한 사항이나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참여기술자(절대평가)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참여기술자 명단은 아래와 같이 분야를 구분하여 과업수행조직 표를 작성한다.
- ①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중복 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사업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 표5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중 토목특급기술자 이상 이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리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 ③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리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 이어야 한다.
- ④ 참여기술자의 보유현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9조 및 법 시행령 별표9 규정에 의한 수리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에 대해 평가한다.
- 해당분야(수리분야) 외 분야에서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60%를 인정하고, 해당배점의 60%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분야(수리분야) 외 분야는 교량 및 터널, 항만분야를 말한다.
- 3) 참여기술자 개인별 용역참여 실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 ①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공공·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에서 발주한 수리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준공(참여) 실적에 한하며, 금액 등을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필) 및 참여자 명단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해당분야(수리분야) 외 분야에서 참여기술자의 실적(건수, 금액)은 60%를 인정하고, 해당배점의 60%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분야(수리분야) 외 분야는 교량 및 터널, 항만분야를 말한다.
-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적을 평가한다. (타법에 의하여 실시한 실적은 제외)
- ④ 현재, 수행 중이거나 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은 제외한다.
- ⑤ 설계 등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이외의 용역을 포함하여 수행한 용역인 경우에는 준공실적(건수, 금액) 중 수리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에 해당하는 준공실적(건수, 금액)을 인정하며, 해당분야(수리분야) 외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준공실적(건수, 금액)은 60%를 인정한다. 이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급내역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 4)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실적건수만으로 평가한다.
- 5)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술 자격정지, 업무정지 및 부실벌점 등의 내용이 게재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용도란 에 사업수행능력평가용으로 표기된 것만 인정)를 첨부하여야 한다.
- 6)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된 기술자만 인정한다. (추후 낙찰예정자 통보시 입찰공고일 기준 보유 증명서 제출)
- 7) 참여기술자가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 8) 평가대상사업에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해당 용역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용역 평가시이를 감점할 수 있다.

다. 유사용역 수행실적(절대평가)

- 1)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 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 ")이 발주한 수리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 준공(참여) 실적에 한하며, FMS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적을 평가한다(타법에 의하여 실시한 실적은 제외)
- 3) 현재 수행 중이거나 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 4)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업체의 참여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라. 신용도(절대평가)

- 1) 점검 진단 실시 결과 평가결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최근 (공고일 기준) 1년간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국토 안전관리원 평가)에 따라 '미흡'의 경우 0.3점, '불량'의 경우 0.5점, '매우 불량'의 경우 0.7점을 감점하며 각 용역건수에 따라 감점하여 평가한다.

2) 업무정지

- 참여기술자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 마다 0.2점씩 강점(1월 미만은 1월로 계산)
- 3) 재정상태 건실도
- ①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 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 할 수 있다.
-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③ 증빙서류(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마.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절대평가)

- 1) 개발실적
- ①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까지만 인정한다.
 - 안전진단관련 건설신기술 : 건당 0.5점
 - 안전진단관련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3점
- ②『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 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예시) 건설신기술 개발 2건, 특허개발 3건(경과기간 8년 1건, 15년 2건)

- 건설시긴술(1점) + 특허(0.5점) =1.5점 (최대 1점, 1점 적용)
- · 건설신기술 : 0.5 × 2건 = 1점
- · 특허 : 0.3 × 0.8 + 0.3 × 0.6 + 0.3 × 0.6 = 0.57(최대 0.5점, 0.5점 적용)
- ③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하하여 인정하다
- ④ 특허는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청에서 발부한 등록원부 및 최초 출원인 확인원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최초 출원인 상에 용역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된 것만 인정한다.
- ⑤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⑥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 ⑦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2) 활용실적

-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실적금액(억원)에 따라 평가한다.
- ②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 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발명진흥법』 제52조에 정한 전문기관이 확인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특허는 경과기가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③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에 있어야 함)
- ④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 실적증명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⑤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이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이 확인한 것에 한하여 한하여 인정한다.
- ⑥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 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3) 투자실적

- ①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 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
- ②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 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 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③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사용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④ 해당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사용실적을 제출한다.
- ⑤ 투자실적이 1%미만일 경우 '0점' 으로 평가한다.

바. 업무중첩도(절대평가)

- 1) 사업책임기술자
- ①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 평가로서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함
- ②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 청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평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기술자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2) 분야별책임기술자
- ①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 평가로서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②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평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기술자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 다만,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1월 미만인 용역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3)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분야별로 평가하여 산술평균을 적용한다.
- 4)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한다. 단, 우리 관리소에서 용역발주기관 등에 확인하여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판명 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사. 가점 평가기준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가 평균 고용인원
-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 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 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Ⅱ.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가. 분야별 평가기준

구 분	세 부 사 항	배 점	평 가 항 목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구 분 배점 책임 분야별 분야별 합계 기술자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계 45 18 18 9								
1) 사업참여	 - 등 급		등급 4 - 2 2								
기술자	- 경 력	45점	경력 17 8 6 3								
(45)	- 해당분야 실적	_	실적(준공건수) 14 5 5 4								
			실적(준공금액) 10 5 5 -								
			- 금액: 13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최근 (공고일 기준) 1년간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한국시설안전공단평가)에								
2) 유사 용역사	업 수행실적 (25)	25점									
	-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	4점									
3) 신용도(10)			따라 '미흡'의 경우 0.3점, '불량'의 경우 0.5점, '매우불량'의								
3) 28 ±(10)	- 업무정지	3점	경우 0.7점을 감점 - 최근 1년간 참여기술자가 기술 자격정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3점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 감점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개발실적	1점	-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 활용실적	1점	특허의 사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적용 . 안전진단관련 건설신기술 건당 1점 . 안전진단관련 건설신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0.6점(최대 1점까지 인정)								
(10)	- 투자실적	8점	. 활용실적(건수 및 금액)에 따른 가중치 부여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 / 건설부문 총매출액)								
	- 사업	6점									
5) 업무 중첩도			따라 평가								
(10)	- 분야별 책임기술자	4점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 되는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가점 (0.3)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합계		100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및 배점표

구분		세	부사형	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합	계			100								
가.	참여기	술자				45								
			등 (자격	: 급 취사학	항)	-	특급기술자	에 이싱 이: 로 <i>=</i>	의한 정밀(으로 국토교 수한 후 그	안전진딘 교통부장 분야으)을 실/ 관이 인 정밀(시할 수 있는 정하는 수리 안전점검 또	= : 분(는	기술자중 토목 야의 정밀안전 정밀안전진단
	책임		경	력		8	10년이상		0년미만 9년이상		미만 이상	8년미민 7년이싱		7년미만
(1)	기술자 (18점)						8.0	8.0 7.2 6.4 5.6					4.8	
	(100)						● 최근(공고			기준				
	실적건수		실적건수			5	1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미만 이상	10건미년 8건이상		8건미만
								5.0		4.5	4	.0	3.5	
							● 최근(공고	일 기준) 7년						
		실적금액			액	5	7억원이상	7억원미만 6억원이상		6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5.0		4.5	4	.0	3.5		3.0	
		등급	구 분 조사 및 시험분야		분	2	특급기술자	ŀ	고급기	술자	중급	라기술자		초급기술자
					시험분야	1	1.0	0.9				0.8		0.7
			분석	및	평가분야	1	1.0	0.9				0.8		0.7
				구	분	6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4년미만
		경력	조사	및	시험분야	3	3.0		2.7	2	.4	2.1		1.8
			분석	및	평가분야	3	3.0		2.7	2	.4	2.1		1.8
	분야별 책임						● 최근(공고	일	기준) 7년	기준				
(2)	ㄱㅁ 기술자 (18점)	실적		7	분	5	11건이상		1건미만 9건이상		미만 이상	7건미민 5건이싱		5건미만
	(= _/	건수	조사	및	시험분야	2.5	2.5		2.25	2	.0	1.75		1.5
			분석	및	평가분야	2.5	2.5		2.25	2	.0	1.75		1.5
							● 최근(공고	일	기준) 7년					
		실적		7	분	5	5억원이상		억원미만 5억원이상	4.5억 4.0억	원미만 원이상	4억원미 3.5억원0		3.5억원미만
		704	조사	및	시험분야	2.5	2.5		2.25	2	.0	1.75		1.5
			분석	및	평가분야	2.5	2.5		2.25	2	.0	1.75		1.5

구분		세	부사항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구 분	2	특급기술	한자	고급기	술자	중급	·기술자	초	급기술자
		등급	조사 및 시험분야	1.0	1.0		0.9			8.0		0.7
			분석 및 평가분야	1.0	1.0		0.9			0.8		0.7
			구 분	3	7년이상	7 ~(년미만 6년이상	6년 ~5년	미만 인상	5년미민 ~4년이	상	4년미만
(2)	분야별 참여	경력	조사 및 시험분야	1.5	1.5		1.35	1	.2	1.05		0.9
(3)	기술자 (9점)		분석 및 평가분야	1.5	1.5		1.35	1	.2	1.05		0.9
	(30)		구분	4	● 최근(공						·	
		실적	T E	4	11건이상	. 11	1건미만 9건이상		미만 선이상	7건미민 ~5건이		5건미만
		건수	조사 및 시험분야	2.0	2.0		1.8	1	.6	1.4		1.2
			분석 및 평가분야	2.0	2.0	2.0 1.8 1.6 1.4 1						
나. 유	구사용역 <i>=</i>	수행실	l적	25								
					● 최근(공	● 최근(공고일 기준) 5년 기준						
			실적건수	12	5건이상		건미만 4건이상	4 <u>건이상</u> ~3건		[미만 3건미민 언이상 ~2건이상		2건미만
	실 적	절대			12.0		10.8	g	.6	8.4		7.2
	27	평가			● 최근(공고일 기준) 5년 기준							
			실적금액	13	6억원이싱		원 미만 억원이상		! 미만 원이상	4억원 미 ~3억원0		3억원미만
					13.0		11.7	10	0.4	9.1		7.8
다. 선	<u> </u> 용도			10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점)	용역 업자	절대평가	4		· 설안전공 0.3점	당단 평가	결과에	따라 각	용역건수	에따	
(2)	업무정지 (3점)	기	'여 술자 절대평가	3		자가 정 령에 따려	밀안전점검 라 기술자격	보는 년 년정지 :	정밀안전 또는 업5	진단과 관련 무정지기간 인 경우 1위	을 합	산하여
								(신용평	[가등급])		
					회사채	A-이상	BBB-	기만 -이상	BBB-미 ,B-이성	말 ccc+	이하	미제출
(3)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 평가	절대평가	3	기업어음	A2-0	A2- A3-	미만 이상	A3-미년 B-이상	라 co	하	미제출
	(3점)	등급			기업신용	A-이상	A-E BBB	기만 -이상	BBB-미 B-이성	말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	.7	2.4	2.	.1	0
						※ 신	용평가등	급확업	인서를 :	기준으로	평가	

구분	세부	사항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1)	개발실적	절대평가	1	1)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 1항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만 인정한다. 2) 건설신기술은 지정된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되,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건설신기술: 0.5점/건 3)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대한 특허는 특허등록 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후 평가.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 까지만 인정한다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5) 위 1), 2)의 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1) 「건석기숙 지흥번」제14조에 따라 지정되 건석시기숙 건석기숙									
(2)	활용실적	절대평가	1	1)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한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가 중치 1.0 0.9 0.8 0.7 0.6 실적 50건 이상 50건 미만 5건 미만 3건 미만 건수 50건 이상 3건 이상 1건 이상실적 70억원 기안원 미만 25억원미만 5억원미만 1억원 미만 금액 이상 25억원이당 1억원이당 0.5억 이상									

구분	서	부사형	+	배점				점	수 겨	l 산 방	법		
	ETUT											선설부문 총 · 총매출액)	매출액에
(3)	투자실적 (8점)		절대평가	8	구 분	3.0	0%이상	3.0% ~2.5%	미만 60상	2.5%D E ~2.0%O -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점 수		8.0	7.	2	6.4		5.6	4.8
마. የ	업무 중첩도			10									
	사업책임	절	보대평가	6		일 ;	기준 잔(–	. —	1개월 이 1산하여		인 용역을 : '	기준으로
	기술자			-	12월 미	만	12월 (15월 [15월 이상 18월 미만		1 2	8월 이상 1월 미만	21월 이상
					6	5.4 4.8 4.2 부과업기간						4.2	3.6
	구분				※ 공	 고일	·- !기준 잔	–		1개월 ⁽ 합산하여		l인 용역을 I가	기준으로
	분야별 절대 책임기술자 평가				6월미만		6월0 ~9월			이상 월미만		12월이상 ·15월미만	15월 이상
	TO TE T	0.1	조사 및 시험분야	2	2		1.8	.8		1.6		1.4	1.2
			분석 및 평가분야	2	2	2 1.8 1.6 1.4						1.2	
바. 7	가점 평가기준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2%	이상 : 0.1점 이상 : 0.2점 이상 : 0.3점		- 처. 건. 전. 한 말. 전. 살. 급. 당 공 공 공 공 공 공 공.	1년·공 건설등 년5 년기: 기한 항병	고일 전 설기술인 목된 자(도 동기건 (한)	설기술(월 기 I.은 입 I.은 입 경력관 (이전 ''. 평균 고한 지 월단위 I관리 평가 용역원	인 신급 (신급 (건설 (건설 (건설 (단로 명 () 수행 () 수행	고일 현자 탁기관으 라야 근무 용인원은 해당업: 균하여 기관에서	된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병력증명서여력이 없는 7 설기술인 7 일 기술인 7 정	직 중인 자 비최초로 다)에 한함 경력관리 대직인원 급체의

다. 제출서류 인쇄 및 제본

- 1) 규격 : A4(210mm×296mm)
- 2) 재질 : 백상지(80g/m²). 양면인쇄(단, 표지는 백색 아트지(200g/m²)
- 3)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 4) 제본방법 : 무선좌철(표지는 양식1과 동일하게 작성)
- 5)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6) 제본순서
-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표지, 양식1)
- (2) 용역 참여 신청서 (양식2)
- (3) 각서 (양식3)
- (4)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
- (5) 과업수행 조직표 (양식4)
- (6)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양식5)
- (7) 사업 참여기술자(사업책임, 분야책임, 분야참여)의 자격 및 경력(양식6)
- (8) 기술자 보유 현황 확인서
- (9) 사업 책임기술자 경력 확인서
- (10)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확인서
- (11) 분야별 참여 기술자의 경력 확인서
- (12) 사업 참여기술자(사업책임, 분야책임, 분야참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양식7)
- (13) 유사 용역 수행실적(양식8)
- (14) 기술용역 실적증명서(양식9)
- (15) 점검 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양식10: 한국시설안전공단 평가)
- (16) 기술자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양식11)
- (17) 재정상태 건실도 (양식12)
- (18)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19) 세무서 발급 최근 재무재표 증명원
- (2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양식13)
- (21) 책임기술자의 업무중첩도(양식14)
- (22)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양식15)
- (23) 자체평가표(양식16)

[양식1]

접수번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명 :

20**.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양식2]

용역 참여 신청서

문서번호: 20** - 호 (TEL:)

수 신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

참 조:

제 목 : 용역 참여 신청서 제출

귀 사업소 공고번호 20** - 호로 공고된 "○○용역"에 참여하기 위하 여 관련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1)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2)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참여기술자 정밀안전진단 교육 수료증(사본) 각 1부

5)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 끝.

20**년 월 일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 (인)

작 성 자 : (☎ FAX

[양식3]

각 서

용 역 명 :

본 업체는 귀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 용역"과 관련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평가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며, 만일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자가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각서로 서약합니다.

20**. . .

업 체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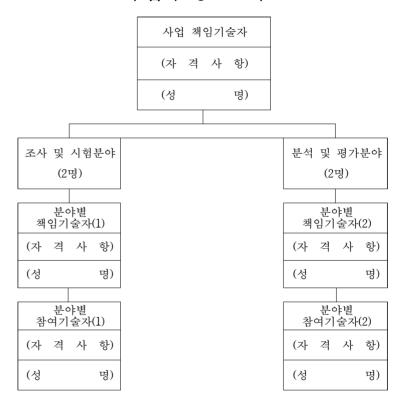
주 소: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장 귀하

[양식4]

과업수행 조직표



[양식5]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계					100%	

첨부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양식6]

시업 참여기술자 (시업책임, 분야책임, 분야참여)의 자격 및 경력

구 분	성 명	생년 월일	학 력 (학위)	기술자 등 급	자 종 류	 항 취득일	해당분야 경 력	비고
1. 사업 책임기술자								
2. 분야별 책임기술지	-							
2. 분야별 참여기술자								

- ※ 1. 참여기술자(사업책임, 분야책임, 분야참여)는 각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 2. 사업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 중 토목특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리분야의 정밀 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 이어야 한다.
 - 3. 경력은 수리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 참여경력을 대상으로 실제 참여일수를 계산하여 평가한다.(경력증명서 주요경력란 참여일 합산) 수리분야 외 교량 및 터널, 항만분야의 경력은 60%를 인정하고, 해당배점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평가 예) 해당분야 경력 : 5년(수리분야 5년)

해당분야외 경력 : 4년(교량 및 터널 3년, 항만 1년)

적용경력 : 5년 + 4년×60% = 7.4년

4. 참여기술자의 보유현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양식8]

사업 참여기술자 (사업책임, 분야책임, 분야참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자격 및 경력

성	명		생년 월일		근무 부서		직 위		
연	령	만 세	최종학교	학 교 졸업일			전 공 (학 위)		
	자격증	·(분야 및 종·	 류)			해당분여	갸 경력	년	월
7]	간	년 월		회 /	나	근무부서	직 위	비	고
			"o] ī	격사항 기	재란"				

2. 해당분야별 유사용역 수행실적

_		,	용역비	평가대	상 실적	사업기간	참여기간	참 여	당 시		,
용	역	명	(천원)	공종	규모	(착수일~ 준공일)	(~)	소속회사	직 위	발주처	비고

- ※ 1. 개인별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정밀안전진단교육 수료증 사본 등)
 - 2.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구분하여 작성하다.
 - 3. "이력사항 기재란"에는 전 근무처 및 현 근무처의 부서와 최종직위를 기재한다.
 - 4. 해당회사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작성한다.
 - 5. 해당분야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준공된 용역으로서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실적으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도급비율을 기재하며, 실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및 참여자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사본일 경우 '원본대조 필' 날인) 해당분야 외 교량 및 터널, 항만분야 수행 실적은 60%를 인정하고, 해당배점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평가 예) 해당분야 실적 : 8건, 5억(수리분야)

해당분야외 분야실적 : 6건, 4억(교량 및 터널 5건 3억, 항만 1건 1억) 적용실적 : 8건 + 6건×60% = 11.6건, 5억 + 4억×60% = 7.4억

- 6. 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과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제외한다.
- 7.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내용과 기재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 20 -

- 8.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9. 실적이 없는 경우는 "실적 없음" 표기

유사 용역 수행실적

용 역	명	준공금액	발 주 처	용역기간		상 실적	지분율	비고
0 1	0	(천원)	E 1 11	(착수일~준공일)	공종	규모	(%)	,,,,,
건								

- ※ 1.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관리주체가 발주하고 준공 완료된 수리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실적만 기재한다.
 - 2. 용역수행 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필)를 첨부하여야 한다.(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3.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준공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 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을 기재한다.
 - 4. 설계 등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이외의 용역을 포함하여 수행한 용역인 경우에는 준공실적(건수, 금액) 중 수리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한다. 이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급내역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 5. 실적이 없는 경우는 "실적 없음" 표기

[양식10]

기술용역 실적증명서

	업체명 (상:	ই)				대	丑	자		
지원이	영업소재지	4				전	화 병	번 호		
신청인	사업자번호	Σ				제	출	처		
	증명서 용고	도 :	적격심사	신청용	<u>}</u>					
	용 역 명				구 분	설계 감리 기타	() ()	:		
용 역 이 해	용역개요									
용이실내 왕이실내	계약번호	계약일자	케이크기기	. 계약 규모		이행실적			н	고
	게 다 인호	계 ㅋ 큰 시	71177 16	규모	공동	비율	실	적	ы	<u> 1</u> 2
	위 사실을	- 증명함						년	월	일
증명서 발 급 기 관	기 관 명	:		(인)	(전	화번.	호 :)
기 환	주 소	:			(F	AX번	호:)
	발급부서	:			담당	자			(인)

- ※ 1. 기술용역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2.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3.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업 체 명	용 역 명	용역기간	처분명(시정/부실)	처분일자	감점	비고
계						

- ※ 1.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한국국토안전관리원의 평가)에 따라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평가한다.
 - 2. 해당사항 없는 업체는 "해당사항 없음" 표시한다.

[양식11]

기술자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성	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	사 유	비고
계						

- ※ 1.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참여기술자의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기재 한다.
 - 2.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표기

[양식12]

재정상태 건실도

7 H	신	용 평 가 등	그	비고
구 분	회사채등급	기업어음신용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
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				

-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을 첨부하여 제출.
 -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양식1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 기술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등록번호	개 발 명 칭	등록청	등록일 (출원일)	만료일	점수(건당 점수*가중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록번호	개 발 명 칭	등록청	등록일 (출원일)	만료일	점수(건당 점수*가중치)

- ※ 1.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업자 (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 한건으로 인정한다.
-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 3. 건설신기술은 건설신기술 지정서, 특허는 특허증. 등록원부, 등록권리자 확인원(공고일 1년이 내 발급)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 자료 미제출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 4. 실적이 없는 경우는 "실적 없음" 표기
- 2. 사용 실적

구 분	업 체 명	명	칭	사용 건수	-실적 금액(천원)	비고
				12.1	E 7(E E)	
건설신기술						
	소 계					
건설기술에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소 계					
	계					

- ※ 1) 당해용역에 필요유무 관계없이 작성
 - 2)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 3) 건설신기술 사용실적은 설계 등 용역업자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내에 안전진단 시행시 적용 또는 사용실적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이 확인한 것에 한하여 인정
 - 4) 특허 사용실적은 용역업자가 최초출원인으로 등록되어,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안전 진단 시행시 적용 또는 사용실적을 발명진흥법 제52조에 의한 전문기관이 확인한 것에 한하여 인정

첨부 : 1.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2. 사용(활용)실적증명서(한국건설신기술협회)

3. 기술개발 투자실적

구 분	20**년	20**년	20**년	계	비고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기 타					
소 계@					
건설부문 총매출액(b)					
사용비율(%)					@/b×100

- ※ 1. 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 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다.)
 - 2.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 4. 실적이 없는 경우는 "실적 없음" 표기

[양식14]

책임기술자의 업무중첩도

1. 사업 책임기술자

구 분	용	역	명	계약금액 (천원)	용역기간 (~)	참여 배치일	기간 종료일	발주처	비고(용역 중단여부)
소 계		건							

2. 참여 기술자

구 분	용	역	명	계약금액 (천원)	용역기간 (~)	참여 배치일	기간 종료일	발주처	비고(용 역중단여부)
가. 분	·야별 책임	기술지	}-						
소 계		건							
나. 분	야별 참여	기술지	}						
소 계		건							

- ※ 1. 참여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잔여과업기간 1개월이상)에 대하여 전부 기재하며, 허위 기재 시는 우리사업소에서 의법 처리할 수 있다.
 - 2. 사업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3.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표기

[양식15]

가점(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 현황)

구 분 (참여회사)	최근1년간 신규고용인원①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②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 (①/②×100)	비	고

- ※1.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2.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 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3.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자 체 평 가 표 (평가서 제출 업체)

평가항목	,	네 부 시	항			평 방	가 ·법	배점		평 가 결 과	평점	비고
총 계								100				
			;	계				45				
	사			소	계			18				
	업	두 급				절 평	대 가	-	토목- (자격	특급기술자 이상 미달시 실격)		
	임 기	경	력			절 평	대 가	8	- ()년		
	기 술	,,	건	수		절 평	대 가	5	- ()건		
	자	실 적	금	액		절 평	대 가	5	- ()억원		
				소	계		18					
1.	н	E	-	절대	조사	및	시험분야	1	- ()급		
· 참	분 야	둥	급	평가	분석	및	평가분야	1	- ()급		
	별	경 력	괡	절대 평가	조사	및	시험분야	3	- ()년		
여	책 임		¬	평가	분석	및	평가분야	3	- ()년		
7]	기		건수	절대 평가	조사	및	시험분야	2.5	- ()건		
술	술 자	실 적		평가	분석	및	평가분야	2.5	- ()건		
=		결식	금액	절대	조사	및	시험분야	2.5	- ()억원		
자			ם 7	평가	분석	및	평가분야	2.5	- ()억원		
				소	계			9				
		u	7	절대	조사	및	시험분야	1	- ()급		
	분야별	둥	급	절대 평가	분석	및	평가분야	1	- ()급		
	참 여	74	= 1	절대	조사	및	시험분야	1.5	- ()년		
	기술자	경	력	절대 평가	분석	및	평가분야	1.5	- ()년		
		31 w) -			조사	및	시험분야	2	- ()건		
		실적	연수	절대 평가	분석	및	평가분야	2	- ()건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 방법	배점	평가결과	평점	비고
			계			25			
2. 유사용역	최근	4	실 적		절대 평가	12	실적 ()건		
수행실적	5년간			액	절대 평가	13	-실적 ()억원		
		•	계			10			
	점잠진 실시결 평가결	과			절대 평가	4			
3. 신 용 도	업무정지, 부실 벌점 등		최근 1년간		절대 평가	3	기술자격정지 ()월, 업무정지 ()월		
	재정상태 신용평가 건실도 등급				절대 평가	3			
		·	계			10			
4. 기술개발		개발·	실적		절대 평가	1	- 건설신기술 ()건 - 특허()건 - 가중치 적용 합계()점		
및 투자실적		활용	실적		절대 평가	1	- 건설신기술 ()건 - 특허()건 - 가중치 적용 합계()점		
		투자	실적		절대 평가	8	()%		
5.			계		1	10			
업무 중 첩 도	사 책임2			절대	평가	6	()월		
중 천	분야별 절대			조사 및 시험분야		2	()월		
토	책임7	기술자	평가	분석 !	및 평가분야	2	()월		
6. 가점	건설2 신규	. – –		1% 이경 2% 이경 3% 이경	상 : 0.1점 상 : 0.2점 상 : 0.3점	0.3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